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6. 6. 14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6. 6. 1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3차총무위원회(96. 6. 19)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과장 김수기)

가. 제안이유

- 호적법시행규칙 개정(1995. 12. 26. 대법원규칙 제1411호)으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해태기간별로 세부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변경(안 제4조제1항 별표2)
 - 현행 : 1월미만~6월이상 4단계 구분
 - 개정 : 7일미만~6월이상 5단계 구분
- 예) 1월이상 3월미만의 기간 해태시(제130조 위반)

: 2단계 20,000원→3단계 30,000원(10,000원 인상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안이 개정되면 과태료 부과가 강화됩니까?	○ 그렇습니다.
○ 부과기준 7일 미만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?	○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어렵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15호
의결	96. 6. 28
년월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4
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호적법시행규칙 개정(1995. 12. 26. 대법원규칙 제1411호)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 별로 세부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

주요골자

○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변경(안 제4조제1항 별표2)

- 현행 : 1월미만~6월이상 4단계 구분
- 개정 : 7일미만~6월이상 5단계 구분

예) 1월이상 3월미만의 기간 해태시(제130조 위반)

: 2단계 20,000원→3단계 30,000원(10,000원 인상)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1항중 “별표2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2]

과 태 료 부 과 기 준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7일 미만	10,000원	20,000원
7일이상 1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40,000원	80,000원
6월 이상	50,000원	100,000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	행		개 정 안		
(별표2)				(별표2)		
과태료부과기준				과태료부과기준		
해 태 기 간	과 태 료			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	
<u>1월 미만</u>	<u>10,000원</u>	<u>20,000원</u>	<u>7일 미만</u>	<u>10,000원</u>	<u>20,000원</u>	
<u>1월이상 3월미만</u>	<u>20,000원</u>	<u>40,000원</u>	<u>7일이상 1월미만</u>	<u>20,000원</u>	<u>40,000원</u>	
<u>3월이상 6월미만</u>	<u>30,000원</u>	<u>60,000원</u>	<u>1월이상 3월미만</u>	<u>30,000원</u>	<u>60,000원</u>	
<u>6월 이상</u>	<u>50,000원</u>	<u>100,000원</u>	<u>3월이상 6월미만</u>	<u>40,000원</u>	<u>80,000원</u>	
			<u>6월 이상</u>	<u>50,000원</u>	<u>100,000원</u>	